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32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 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립예술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단원이 더욱 창원시립예술단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7,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cost403@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2
----------	-----

발의연월일: 2023. 11. 17.

발 의 의 원: 정순욱 · 김경희 · 김남수 · 김상현 · 문순규
백승규 · 서명일 · 심영석 · 오은옥 · 이우완
이정희 · 이종화 · 최은하 · 한은정 의원(14명)

찬 성 의 원: 강창석 · 김혜란 · 이해련 의원(3명)

1. 제안이유

창원시립예술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단원이 더욱 창원시립예술단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을 “상임단원은”으로, “이를 허용할”을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원”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단원”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3조(단원의 겸직 및 복무) ① 단원은 <u>시장의</u>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다.</p> <p>② <u>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u>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이를 허용할 수 있다.</u></p> <p>③ <u>단원의</u> 복무에 <u>관하여는</u>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3조(단원의 겸직 및 복무) ① -- -- <u>부단장</u>----- ----- ----- -----.</p> <p>② <u>상임단원은</u> ----- ----- ----- <u>부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장을 할</u> ---.</p> <p>③ <u>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단원</u> ----- <u>관한 사항은</u> ---- -----.</p>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전 결 사 항

○ 문화관광체육국

소 관 별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관)	실국장	부시장	시장
사무합계	51	0	1	18	20	10	2
문화예술과	1.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 수립						○
	2. 문화상 운영						
	가. 창원시 문화상 시상계획 수립					○	
	나. 창원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	
	3. 미술 장식품 설치 업무				○		
	4. 시사편찬				○		
	5. 문화산업 업무의 종합기획						
	가. 문화콘텐츠 산업 종합육성					○	
	나. 문화사업 조성 추진관리				○		
	다. 전통문화사업 개발육성				○		
	라.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6.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 업무지도·감독 총괄			○			
	7.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육성			○			
	8. 종교단체 관련업무						
	가. 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				○		
	나. 종교단체 실태조사		○				
	다. 종교단체 행사지원			○			
	9. 문화예술단체 지원						
	가. 민간예술단체 발전계획 수립					○	
	나. 예총 시 지부육성 및 각종 행사지원			○			
	다. 민간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			
	10.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가. 문예진흥기금 신청접수			○			
	나. 문예진흥기금 신청취합 요구			○			
	11.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가. 시립예술단 모집 및 운영계획					○	
	나. 시립예술단원 전형 심사위원 선정				○		
	다. 시립예술단원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			
	라. 시립예술단원 복무에 관한 사항			○			
	12. 시립예술단 연주회(공연)개최						
	가. 기본방향 결정				○		

○ 문화관광체육국

소 관 별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관)	실국장	부시장	시장
사무합계	27	0	0	9	12	5	1
	나. 구체적 연주계획 수립 및 시행			○			
13. 예술단원 평가							
	가. 예술단원 자체평가 계획				○		
	나. 예술단원 자체평가 실시			○			
14. 시립예술단 위.해촉							
	가. 간부(지휘자,안무자)					○	
	나. 단원				○		
15.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							
	가. 예술공간 조성계획 수립					○	
	나. 예술공간 관리, 운영				○		
16. 문화재 이외의 시설 영선 관리				○			
17. 지명위원회 및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운영					○		
18. 향토지 발행 및 향토사 연구, 조사, 발굴 보존							
	가. 향토지 발행				○		
	나. 향토사 조사, 연구			○			
19. 문화원 관리				○			
20. 문화예술 총무계획					○		
21. 창원 아동문학 세계대축전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추진			○			
22. 창원인물 재조명 사업 추진				○			
23. 문화도시 전략 수립 및 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						○
	나. 기본계획 수립					○	
	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		
	라. 세부추진계획 실행			○			
24. 문화예술 관련 전략 수립 및 관광자원화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다. 세부추진계획 실행			○			
25. 창동예술촌 관리·운영					○		
26. 창동예술촌 프로그램 개발지원, 인프라 구축					○		
27.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지원 운영					○		
28. 창동르네상스 방송국 운영지원					○		

■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제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복종의 의무: 단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 의무: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보안 유지의 의무: 직무상 취득한 사무 중 예술단에 중대한 손실을 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겸직 금지 의무: 단원은 단장의 허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상임단원은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단체와 단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고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는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5. 다른 단체 출연 금지 의무: 단원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공연, 강의 외 외부단체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창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창원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창원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창원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4.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각 예술단체의 일반사무, 홍보, 마케팅 등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에 사무팀을 둘 수 있다. 또한, 전체 사무팀 정원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각 예술단체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관련 사업, 예술단체간 균형발전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③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는 단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공연기획, 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예술 강좌, 홍보·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예술단체의 사무팀장은 공연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단원 관리 및 일반행정, 홍보·마케팅, 회원관리 등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⑤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등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단장
2. 부위원장: 부단장
3. 당연직 위원: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예술단업무 소관 부서장,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
4. 위촉직 위원: 예술단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되,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③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술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

1. 출연단원은 연주 및 공연 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2. 비출연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단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수습단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으로서 공개전형은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 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의 방법) ① 전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며, 면접은 서류심사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과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개전형의 채점 기준 등 상세 사항은 전형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출연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을 필요한 경우 내부전형을 통해 비출연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신규 위촉과 정기 실기평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며, 전형위원은 전형할 때마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따로 위촉한다.

제9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은 해당 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10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은 상호 계약에 따른다.

제11조(재위촉) ① 단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단, 계약직으로 위촉한 단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1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

4. 징계위원회에서 해촉이 결정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
6. 개인 기량향상을 위한 무급휴직기간이 전 위촉기간 내 총 3년을 초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2. 단원으로서 평정기준에 미달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6.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8. 고의 또는 과실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람
9. 현저한 근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③ 삭제

제13조(단원의 겸직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다.

②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명예퇴직)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 제한 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제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촉직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및 외부공연 출연료)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

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연 입장료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공연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입장권) ① 유료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 공연별로 행사운영, 각종 민원 및 사고에 대비한 유보석 확보를 위해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입장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연사업 주관) ① 시장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종류,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휴단 및 휴직) ① 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1개월 이상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예술단체별로 일정기간 휴단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예술단체별로 일정 기간 전 단원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휴단 및 휴직기간 동안 단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 운영자의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③ 시장이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